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443번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5년 2월 3일
- 회 부 일 : 2025년 2월 6일

### 2. 제안이유

-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의 추진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의2).
- 평생교육진흥원을 평생교육이용권 전담기관으로 지정함(안 제5조의3).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시 필요한 서류를 신설함(안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입법예고(2024.11.21. ~ 12.11.) 결과 : 의견 없음.

## 5.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의 추진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 정비 등(용어의 정비 등)을 개정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였음.

### ※ 본 개정안의 내용

-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추진 주체 변경에 따른 규정 신설
  -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안 제5조의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 전담기관의 지정 등 (안 제5조의3)
- 용어변경 및 용어의 정비
  - 조문에 맞춘 용어변경 (안 제3조 조제목, 안 제31조제1항)
  - 약칭 관련 용어변경 (안 제3조제1항, 안 제9조제3항제1호)
  - 표현 간소화 (안 제3조제2항)
  - 붙여쓰기, 띄어쓰기 (안 제2조제2호, 안 제8조제1항제3호)
  - 인용 조례 제명 현행화 (안 제13조제2항)

### 가.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추진 주체 변경에 따른 규정 신설

#### 1)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안 제5조의2, 안 별지 제1호·제1호의2·제2호서식)

- 안 제5조의2는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사업의 추진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장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안 별지 제1호서식, 안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첨부 서류(안 별지 제2호서식)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서울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

□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 교육부,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금 지역별 배정(안) 안내(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4950, 2024.8.28.)

□ 추진배경

-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
  -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1.12.)
  - : 바우처 대상 '저소득층' → '모든 국민'까지 확대, 지자체도 평생교육바우처 가능

〈 「평생교육법」 개정 내용('21.12월) 〉

❖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발급·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 (제2조, 제16조의2, 제16조의3등)

- '25년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추진주체 변경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교육부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금 지역별 배정(안) 안내(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4950, 2024.8.28.) : 국(70%)-지방비(30%) 매칭 배정

□ 사업개요

- (사업예산) 7,229백만원 (지원금 6,635백만원, 운영비 59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인원	사업비 총계	사업비 구성			비고
			국비 (70%)	시비 (9%)	구비 (21%)	
<b>총계</b>	<b>21,067</b>	<b>7,229</b>	<b>4,645</b>	<b>1,191</b>	<b>1,393</b>	
평생교육이용권	19,294	6,077	4,254	547	1,276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1,773	558	391	50	117	
전담기관 운영비	-	594	-	594	-	

- (사업기간) '25. 3. ~ 12. (결제정산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주요내용) 평생교육강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 (추진절차) 신청·모집(3~4월) → 사용 및 모니터링(5~11월) → 사업 정산(12월)

□ 지원자격 및 지원규모

- (지원대상)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디지털·노인·지역 특화 대상, 장애인 등(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 (지원규모) 평생교육이용권 17,364명,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1,595명
  - 국비 지원금이 사업규모 대비 90% 수준으로 배정되어 서울시 사업추진시 배정인원 (21,067명)의 90% 수준으로 맞추어 지원대상 선정 지원
  - ※ 서울시 배정인원 : 평생교육바우처 19,294명, 장애인평생교육바우처 1,773명
- (지원액) 1인당 1회 35만원 ※ 우수 이용자를 선정하여 35만원 추가 지급 가능

□ 바우처 제공 및 사용방안

- (제공형태) 카드사와 연계하여 전자식 바우처(체크카드) 발급가능
- (사용기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가맹점)
- (사 용 처)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해당 강좌 교재비

출처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2024.10.31.),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5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u>  <u>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u>  <u>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u></p> <p><u>②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u>  <u>람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전자</u>  <u>문서를 포함한다)에 「평생교육법 시행</u>  <u>규칙」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전</u>  <u>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5조</u>  <u>의3에 따른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u>  <u>야 한다.</u></p> <p><u>③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u>  <u>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u>  <u>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u>  <u>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u></p> <p><u>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u>  <u>제1호서식</u></p> <p><u>2.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u>  <u>별지 제1호의2서식</u></p> <p><u>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u>  <u>서: 별지 제2호서식</u></p> <p><u>④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에 있어 이</u>  <u>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의</u>  <u>범위,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u>  <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u>  <u>정한다.</u></p>

○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평생교육법」(제16조의2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제1항)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1항)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담기관 지정 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제2조의2 제2항,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식(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과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안 제5조의2 규정(서식 포함)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sup>1)</sup>.

※ 「평생교육법」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② 제1항에 따라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 교육부 방침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기본계획(2025.1.24.)>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서식 및 신청·발급 및 사용 관리)’,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등을 주요 추진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 전담기관의 지정 등 (안 제5조의3)

- 안 제5조의3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평생교육진흥원<sup>2)</sup>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관리, 상담,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5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u></li> <li><u>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u></li> <li><u>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u></li> <li><u>4.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장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u></li> </ol>

2)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의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평생교육법」(제16조의2제5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5)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 지정 권한,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의 업무(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앞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4항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는 점, 교육부 방침에서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 제5조의3 규정 신설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평생교육법」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⑤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5(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2. 그 밖에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 ②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
  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평생교육국은 본 개정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월 20일 평생교육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사업 대행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sup>3)</sup>되어,
  - 본 개정안의 심의·의결에 앞서 전담기관을 미리 지정하고, 협약을 기체결한 평생교육국의 사업 추진은 의회의 입법 권한을 약화시키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행위라고 보이며,
  - 또한 본 개정안의 처리 유무에 따라 사업 추진 일정(사업의 시작 시기 지연 등)에 변동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생교육국의 안전 제출 시기가 크게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사업(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낮은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마지막으로 지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 의견과 같이 향후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의 분담 비율이 조정되는 경우 사업 유지를 위한 서울시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국가와 재원 분배에 대한 사전협의와 적절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본 사업은 국비 보조(매칭) 사업(국비 70: 시비 9: 구21)으로, 당초 국가(교육부) 사업으로 진행하다 2025년부터 사업 추진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향후 일방적으로 분담 비율이 조정되는 경우 사업 유지를 위해 서울시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도 있으므로 국가와 재원 분배에 대한 적절한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출처 :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2024.12.13.), 68p

3) 평생교육국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전담기관 지정 및 사업 대행 협약체결 추진계획>(평생교육과-763호, 2025.1.20.)을 통해 평생교육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사업 대행 협약을 체결(2025.1.21.)하였음.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사업 전담인력(계약직원 3명) 채용 절차를 진행(2025.3.19. 임용예정)하고 있음.



## 나. 용어변경 및 용어의 정비

### 1) 조문에 맞춘 용어변경 (안 제3조 조제목, 안 제31조제1항)

- 안 제3조는 조제목을 “(평생교육진흥 책무)”에서 “(시장의 책무)”로 하고, 안 제31조제1항의 내용 중 “소속공무원”을 “담당 공무원”으로 용어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 제3조는 평생교육진흥정책 수립·추진과 소관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 등에 대한 평생교육 실시 권장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 조례 제31조(지도·감독 및 평가) 제1항의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를 확인·검사하는데 있어서 소속공무원이라는 용어보다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평생교육진흥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 -----.
제31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 ----- ----- 담당 공무원 ----- ----- -----.

## 2) 약칭 관련 용어변경 (안 제3조제1항, 안 제9조제3항제1호)

- 안 제3조제1항은 조문 중 “시민”을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안 제9조제3항제1호는 조문 중 “서울특별시의회”를 “의회”로 용어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약칭 사용에 따른 용어변경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평생교육진흥 책무) ① 시장은 모든 <u>시민</u> 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u>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u> ----- ----- -----.
제9조(협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u>서울특별시의회</u> 의원 2. ~ 5. (생략)	제9조(협회의 구성)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 1. <u>의회</u> ----- 2. ~ 5. (현행과 같음)

## 3) 표현 간소화 (안 제3조제2항)

- 안 제3조제2항은 내용 중 “소관에 속하는”을 “소관의”로 표현을 간소화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미 전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sup>4)</sup>,
  - 관련 「평생교육법」(제5조제4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소관에 속하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4) 해당 표현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법제처)과 「공공언어 바로 쓰기」(국립국어원)에서도 잘못된 사용 또는 고쳐 써야 할 용어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에서 “소관에 속하는”을 검색한 결과 현행 법령(746개)과 서울시 자치법규(29개)에서 사용 중인 표현임을 고려할 때 상위법령과의 용어 정합성에 부합한 개정인지, 임의적인 표현 간소화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평생교육진흥 책무) ① (생 략) ② 시장은 시 <u>소관에 속하는</u>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u>소관의</u> ----- ----- ----- -----.

#### 4) 붙여쓰기, 띄어쓰기 (안 제2조제2호, 안 제8조제1항제3호)

- 안 제2조제2호는 내용 중 “평생교육 시행계획”을 “평생교육시행계획”으로 붙여쓰기하고, 안 제8조제1항제3호는 내용 중 “관련기관간”을 “관련기관 간”으로 띄어쓰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의 진흥 및 <u>평생교육 시행계획</u> 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 - <u>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u> ----- ----- -----.

<p>치한 평생교육협의회를 말한다.</p> <p>제8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① (생략)</p> <p>1. 2. (생략)</p> <p>3. 평생교육 <u>관련기관간</u>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p>	<p>-----.</p> <p>제8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p> <p>1. 2. (현행과 같음)</p> <p>3. ----- <u>관련기관 간</u>-----</p> <p>-----</p>
---	--

### 5) 인용 조례 제명 현행화 (안 제13조제2항)

- 안 제13조제2항은 내용 중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제10조”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로 인용 조례 제명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현행	개정안
<p>제13조(회의) ① 삭제</p> <p>②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3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p> <p>-----.</p>

전문위원	정찬일	입법조사관	최현종
------	-----	-------	-----

## 별첨1. 개정안 별지 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이내
신청인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사람( )		
	주소		
	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	
통지방법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p>신청인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li> <li>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li> <li>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li> </ol>	<p>수수료 없음</p>
<p>담당자 확인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li> <li>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li> <li>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li> <li>2.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li> <li>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li> <li>4. 가족관계등록부</li> <li>5.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li> <li>6. 주민등록표 등본·초본</li> </ol>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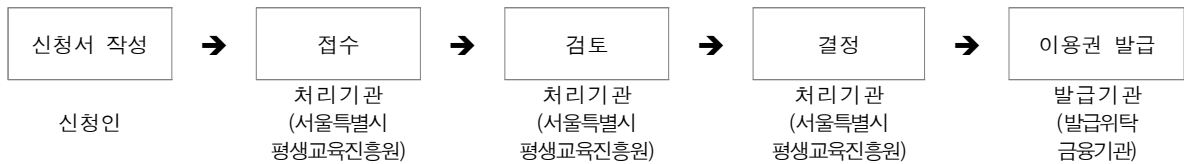
작성방법

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또는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별지 제1호의2서식]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2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이내
신청인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등록 장애인 여부 여 [ ], 부 [ ]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이 아닐 경우, 이용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분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 [ ] 그 외 ※ 해당되는 사항은 전부 체크	
	주소	
	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	
통지방법	[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신청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li> <li>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li> <li>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li> <li>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li> </ol>	수수료 없음
담당자 확인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li> <li>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등록장애인 확인)</li> <li>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li> <li>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li> <li>2.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li> <li>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li> <li>4. 가족관계등록부</li> <li>5.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li> <li>6. 주민등록표 등본·초본</li> </ol>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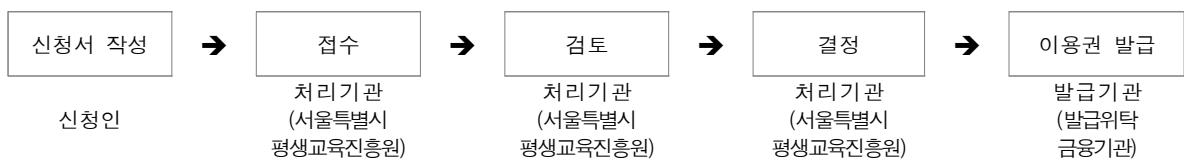
**작성방법**

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또는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집주소, 대상유형, 결과통지방법, 카드번호, 휴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수신동의 여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선정·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선택)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회원 계정정보(ID, 비밀번호),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 값(CI), 회원가입동의 여부, 평생학습계좌번호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계좌 발급 및 학습이력관리 -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 회원관리	5년, 회원 탈퇴 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선정·지급에는 제한이 없으나 학습이력관리 등 부가서비스 제공은 제한을 받습니다.		
선택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제공받는자	개인정보 제공목적	개인정보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주민센터 포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발급위탁 금융기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 이용자 선정을 위한 정보제공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자격확인 - 평생교육이용권 한도금액 부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유형, 결과통지방법, 카드번호, 핸드폰(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수신동의 여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여부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선정·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 고유식별정보 제공 고지

수집 및 제3자 제공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 처리 제3자 제공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받는자	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	5년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주민센터 포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발급위탁 금융기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이라는 긴급한 재산상 이익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며, 위의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선정·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제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며,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장 귀하